

제주지방법원 2021. 2. 17 선고 2019나150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

담당변호사 전해청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 종결 2021. 1. 20.

판결 선고 2021. 2. 17.

제 1 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. 10. 10. 선고 2017가단56065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,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. 10. 29. 접수제112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

2015. 10. 29. 접수 제112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예비적으로, E과 C 사이에 2011. 11. 29.1) 별지 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당초 피고와 C 사이의 2015. 10. 27. 체결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다가,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여서무효임을 전제로 C를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, 종전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중사해행위취소 청구를 E과 C 사이에 2011. 11. 29.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. 그러나 위 각 청구는 서로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그중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지면 원고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적 청구의 병합으로 볼 수 있고, 다만 원고가 기존 청구와 추가 된 청구에 관하여 심판의 순서를 정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D는 원고로부터 2009. 10. 21. 1억 원, 같은 해 11. 6. 2억 원을, 이자 연 6%, 변제는 2012. 10. 20., 2013. 11. 5., 2014. 11. 5.에 각 1억 원씩 하는 것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. D의 아버지인 E은 2010. 7. 또는 8.경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E은 2011. 11. 29. 아내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(이하 '이 사건증여계약'이라 한다), 2011. 12. 11.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9호로 E에게 가.항 기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, 위 법원은 2015. 10. 6.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15. 10. 22.

확정되었다.

라. C는 2015. 10. 27. 친동생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(이하 '이 사건 매매예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15. 10. 29. 피고에게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(이하 '이 사건 가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마.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1091호로 C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소(이하 '관련 소송'이라 한다)를 제기하여 2019. 10. 10.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, C가 같은 법원 2019나14974호로 항소하였으나, 항소심법원은 2021. 1. 19.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.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관련 소송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. 한편, C와 피고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실제로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장차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때문에 발생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예약이 있는 것처럼 통정하여 체결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바, C에 대한 관련 소송에 따른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, 위 채권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아가 피대위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

관하여 살펴본다.

살피건대 C가 피고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,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C는 아무런 대가 없이 채무초과상태였던 남편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, ② C는 원고가 E에 대해 제기한 대여금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5일 후에 동생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점, ③ 피고는 E 또는 E이 운영하던 회사 (주)K에 대한 임금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대물변제조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와 C는 원고의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되고,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봄이 타당하다.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.

다. 소결론

그렇다면 원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(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이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종철, 판사 류호중, 판사 조병대

별지

목 록

1. 제주시 F 전 466㎡
2. 제주시 G 전 152㎡
3. 제주시 H 전 3240㎡
4. 제주시 I 전 5630㎡
5. 제주시 J 전 3243㎡. 끝.

1) 원고는 'E과 C 사이에 2015. 10. 27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'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, 이는 'E과 C 사이에 2011. 11. 29.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'의 오기임이 분명하다.

